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정 2001. 9. 1.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개정 2015. 3. 31.
개정 2016. 11. 9. 개정 2017.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학칙에 의거 대경대학교 학생의 학업성적(이하 “성적” 이라고 한다)평가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방법) ① 개설된 전교과목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A등급(A+, A0)의 비율을 30% 미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직교과, 현장실습(CO-OP교과 포함)교과, 산업체위탁교육과정교과, 간호(학)과 임상실습교과, 학사학위전공심화교육과정교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외국대학 초청교류학생의 경우는 상대평가 원칙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3.11.15., 2015.03.31., 2016.11.9.>

②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등급은 "F"로 처리한다.

③ CO-OP교육과정의 경우 성적 산출 및 평가는 CO-OP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의한다. <신설 2014.3.1.>

제3조(성적반영비율)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에 시험, 과제물부과, 세미나, 실험실습보고서 등 교과목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 및 비율을 명시·반영한다.

제4조(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중간고사를 마친 군입대자의 성적처리는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휴학원에 성적인정 여부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표시하게 하여 처리한다.

② 수업일수 3/4이전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제5조(재수강성적) 학칙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하여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3.7.1.>

1. 삭제 <2016.11.9.>

2.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 학기의 성적에 포함시킨다.

3. 재수강시에는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A0이하를 줄 수 있다. <신설 2015.3.31.> <개정 2016.11.9.>

4. 재수강은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점이 B미만인 경우에 한해 학기당 9학점 범위 내에서 재수강을 허용한다. <신설 2015.3.31.>

제6조(수강불허성적)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7조(미수강 과목성적) 수강신청 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성적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교과목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8조(중복취득학점처리)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취득한 학점은 후에 취득한 학점을 무효로 한다. 다만, 학칙시행세칙 제33조에 의거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7.1.>

제9조(성적입력 및 산출근거관리) ① 담당교원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개인별 성적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기일 내에 입력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산 입력되지 않은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④ 학과·학부에서는 성적 평가서, 시험 과제물, 출석부 등 관계문서는 3년간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0조(성적정정) ① 학생들은 입력기간 후 성적정정신청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교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교원은 동 기간 내에 이를 검토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열람 및 정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성적정정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성적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제10조의2(성적포기) ① 성적포기는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한다.

② 성적을 포기하고자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에 성적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성적포기를 신청한 교과목은 학적변동(휴학, 제적)에 관계없이 취득과목에서 삭제하며 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본조신설 2015.3.31.]

제11조(성적의 보관) 학생의 성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매 학기 담당교원의 교과목별 성적

2. 매 학기 학생 개인별 성적

제12조(평균성적의 산출) ① 학업성적의 총평균 평점을 산출할 때에는 평점에 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신청학점수로 나눈 값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②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평점계

2. 총점평균

3. 총점계

4. 백분율

5. 취득학점

③ 모든 성적이 동일할 경우 같은 성적순위로 처리한다.

제13조 <삭제 2017.9.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